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 경 주

(부산외국어대학교)1)

《목 차》

1. 서론
2. 선행연구 및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 2.1 선행연구 검토
 - 2.2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3.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현황
 - 3.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 취지
 - 3.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추진 경과
 - 3.3 과정 및 이수 시간
 - 3.4 참가 신청 및 절차
4.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4.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의 문제점
 - 4.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개선 방안
5. 결론

<Abstract>

Lee Gyeong Joo. 2018. 1. 15.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Korean Education in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1, 77-100.

1) 본 논문은 ‘한국어교육 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국제한
국어교육학회 2017년 제 48차 추계 학술대회의 발표 내용을 최근의 정책변
동을 반영하여, 보다 정밀하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Various Korean education for foreigners are conducted by language school under college, multi-culture family support center,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institution under ministry of justice, welfare center or foreigners' support group. Among them Ministry of Justice's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has received attention. Government's multi-cultural policies that have been criticized due to redundant support from similar polices of each department. Korean education is now in trend of combined as KIIP(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 is composed of "Korean language and Korean culture curriculum" and "Understanding Korean society curriculum". When one completes both curriculum, it provides incentive when one obtains nationality, residence permit or changing visa. In the past, one could participate in social integration program only through advance evaluation, but recently, as it is connected to Korean program and TOPIK program from multi-culture family support center, the proportion of not only the married immigrant but also the immigrated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foreign students and foreign workers is increasing. However, despite the fact that the program has been operating for 9 years, there are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policy. For KIIP to play its role as representative Korean education by the government, there are many problems to be improved such as curriculum, time and evaluation system. This paper suggested expansion of education time, review on retaking system, review on evaluation system and connected programs after completion to make social integration program Korean language education to actualize its essential goal based on the current problem of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orean education

1. 서론

법무부 2017년 11월 통계에 의하면 2017년 11월 31일 현재 체류 외국인인 2,130,542명이다.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10년 만에 2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인구의 4% 수준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 특히 3개월 이상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중도입국자녀 등 다양한 형태로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한국어는 한국에서의 원활한 생활을 위한 수단으로서 한국 생활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민자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어 습득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다문화관련 정책의 많은 부분 또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증진’에 초점을 맞춘 이민자의 한국어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³⁾

현재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한국어교육은 그 대상에 따라 대학교의 언어교육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복지관이나 외국인 지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

2) 체류외국인 연도별 현황 (법무부 통계월보 2017년 11월호)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910,149	1,066,273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1,445,103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30,542

3)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시행주체인 법무부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나 국립국어원의 교재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등의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민자라 용어를 통일해 사용하겠다.

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기타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사회통합교육이다.⁴⁾ 2009년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10년부터 정식 출발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모든 이민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2018년 1월25일 전국 296기관이 운영기관으로 등록되어 현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⁵⁾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 과 ‘한국사회이해 과정’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과정을 이수완료하면 이민자의 국적 및 영주권 취득, 비자 변경 등 체류 자격 변경 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⁶⁾

한편 각 부처 간 중복지원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정부의 다문화정책 중 한국어교육은 최근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흡수·일원화되는 추세다. 각 부처에서 외국인을 위한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4.1.15. 제8차 국무총리실 산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다문화가족정책 개선 방안 중 한국어교육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어디에서 교육을 받더라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기관과의 한

4) 사회통합정보망 및 법무부 공고 제 2017 - 295호 참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모집공고를 보면 KIIP 사업개요 중 사업 목적에 정의가 드러나 있다.

5) 인터넷 사회통합정보망 참조. 운영 사정에 따라 향후 추가 지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6) 이수 혜택 적용 ▶귀화 신청 시(귀화필기시험 면제/귀화면접심사 면제/국적심사 대기시간 단축)▶영주자격 신청 시(한국어능력 입증 면제-장기체류 외국인의 일반 영주자격 신청/국민 배우자의 영주자격 신청/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영주자격 신청/방문취업자의 영주자격 신청)▶체류자격 신청 시 (장기체류 외국인의 거주 자격 신청/비전문취업 선원취업 방문취업자의 거주 자격 신청 또는 특정 활동 자격 신청)▶사증 신청 시(한식조리연수, 제주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 국내외 전문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등)

국어과정 연계,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의 연계 등 연계과정제도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⁷⁾ 이는 표면적으로는 지자체 중심의 한국어교육으로 일원화하는 것이지만, 지자체에서 공부한 이민자들이 국적이나 체류 혜택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연계제도를 반드시 거친 후 이수완료 할 수 있고, 이수완료를 해야 국적 및 체류 상 혜택이 주어지므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이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일원화, 표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9년 출발 당시에 비해 이민자를 위한 대표적인 한국어교육으로서 그 위상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으나 참여자 및 대상 확대, 일부 의무제로 운영 등 일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상 큰 틀은 변화가 없다.⁸⁾ 한 예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능력 향상이라는 한국어교육 목표에서 본다면 여전히 각 단계별 교육 시간은 김중섭 외(2010, 2011)의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 200시간보다 훨씬 짧은 단계별 1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표적인 언어교육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알 수 있다.⁹⁾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일부

7) 연계과정제도란 대학 법인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한국어교육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정으로 인정함으로써 타 기관에서 교육 받은 자도 중간평가에 바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8) 2016년 7월1일부터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가 영주자격을 신청할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기본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9) 최근 3년간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급2단계 참여자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최근 유학생의 참여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결혼이민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 이민자	일반	
2013 (D 기관 6명)	4	2	(중도입국자녀2)
2014 (D대 14명)	11	3	(중도입국자녀2 / 한국계러시아인1)

를 제외하고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다. 일각에서 여성결혼 이민자들에게 전체적으로 교육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누구나 꼭 참여해야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여타의 다른 방법을 본인이 선택하면 된다.¹⁰⁾ 시간에 급급해 ‘시간과 교육의 주객이 전도’ 된 듯한 현재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의 현실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선행연구 및 우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국내 사회통합프로그램 현황을 간단히 정리한다. 또한 현장에서 느꼈던 문제점을 바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이민자의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진정한 한국어교육 과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확대, 재이수제도의 검토, 평가체제 검토, 이수 완료 이후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및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현재 우리나라 사회통합프로그램 제도의 모델로 삼은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특징을 살펴본다.

2015 (D 기관 16명)	13	3	(한국계러시아인3)
2015 (B대 9명)	7	2	(중도입국자녀1/한국계러시아인과 결혼한 러시아인1)
2016(Y건강가정지원센터 19명)	14	5	(유학생3/중도입국자녀1/회화강사1)

10)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F-6)는 국적취득을 원할 때 일반 외국인과 달리 필기시험이 면제되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아도 귀화면접시험(인터뷰)를 통과하면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2.1 선행연구 검토

선행논문을 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2009년 이전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당위성을 강조하거나 초창기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실시된 이후에 나온 논문에서는 법무부가 공시한 100시간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단계별 시간은 언어교육으로서 부족함 등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관련 논문이 많지 않고, 이러한 목소리가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성순(2008)은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발표문을 통해 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은 각 부처 간 중복지원을 피하고 부처별 지원 업무를 달리하여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또한 독일과 프랑스의 예와 같이 한국에서 건강한 국민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전 교육의 역할을 할 것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면접심사의 용이함은 한국사회로의 건강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당위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을 주로 언급했다.

하지만 김일란 외(2008)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핵심은 언어교육인데 학습자의 교육과정 참여의 의무화 문제만이 부각되어 실질적인 언어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논의 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한국어 수준을 초급2로 보고 있으나 목표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는 학습자가 200시간 동안 초급2 수준을 완성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¹¹⁾ 특히 교육 참여를 의무화할 경우 일어날 수 있

11) 초창기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초급2까지 이수하면 바로 5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으나 2013년부터 일반이민자와 똑같이 중급2단계까지 마친 후 중간평가에 합격해야 5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

는 문제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로 인해 한국어교육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고 지적,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¹²⁾

한편,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논문을 발표한 박혜숙(2012, 2014)은 독일의 통합과정과의 비교를 바탕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이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민자 집단에 따른 프로그램의 세분화 및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화, 관련 기관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 교육시간의 확대 및 교육목표의 재설정 그리고 표준화된 교육과정, 평가체제의 확립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통합과정과는 달리 학습자 요구에 대한 고려 없이 한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편중되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의 단계별 100시간은 목표 도달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김중섭 외(2010)의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에서 제시한 200시간으로 설정하되, 독일의 통합과정에서와 같이 빠른 학습 진보를 보이는 학습자를 위한 단기 속성 과정이나 중간시험을 통한 월반제도 등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동기 및 성취도에 따라 교육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혜숙(2012)에 의하면 독일의 ‘통합과정’ 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세분화와 전문화, 교육시간 확대, 표준교육과정과 표준평가체제의 확립 등을 주장했

12) 김일란 외(2008) 참조. 이 논문에서는 법무부가 가정과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학습 참여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본인은 참여를 원하지만 남편을 포함한 가족들이 한국어교육 참여를 불허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안한 유인책이 참여한 집단에게만 주기 때문에 참여를 못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인권적이다. ▶가사노동에 생계를 위한 경제적 기여를 위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학습 자체가 과중한 짐이다. ▶교육환경에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등이다.

지만 이 또한 현장에서의 재이수제도의 문제점, 평가 상의 문제점 등 실제적이고도 세세한 부분까지는 개선안으로 반영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재인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책임 집필진이기도 한 이미혜(2015)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정의 발전과정에 대해 ▶1단계-한국어교육과정 부재(2007-개발연구/2009운영) ▶2단계-교재개발, 평가체계 개발로 교육과정 보완 운영(2010-한국어교재 개발/2011-발전방안 연구, 평가체계 개편) ▶3단계-한국어교육과정 개편, 교재 개편(2012-한국어 교육과정 개편 연구/2013-2014 한국어교재 개편/교사 교육과 재정부) 등 3단계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의 범주는 Graves(1996)의 12가지 범주 구분, 국제통용 한국어 교육과정 표준 모형의 범주 선정,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교육을 통하여 검증된 내용들(기존 교재 포함 내용), 요구조사 및 전문가 간담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졌다고 배경을 밝히고 있다.¹³⁾ 그리고 교육 참여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어휘영역에 대해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¹⁴⁾ 이는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의

13) 교육과정의 내용 범주는 ①주제 ②기능/과제 ③언어지식-어휘 문법 발음 텍스트 ④언어기술-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⑤문화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내용은 이미혜(2015) 논문 참조.

14)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의 15과 한국의 선거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를 살펴보면 ▶선거관련 어휘로 대통령선거/국회의원 선거/후보자-출마하다, 당선되다/유권자-뽑다-투표하다-선출하다/선거일-투표 장소, 투표용지, 투표함, 개표하다 ▶지도자의 자질 관련 어휘로 인품이 훌륭하다/지도력이 있다/정직하다/책임감이 있다/공정하다/판단력이 있다 ▶투표절차 관련 어휘로 투표소를 방문하다/신분증을 제시하다/신분증을 확인하다/투표용지를 받다/기표소에 들어가다/기표하다/투표함에 넣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교사 지침서에 보면 한 단원의 수업은 보통 5차시로 구성, 어휘(40분)/문법(80분)/말하기 듣기(55분)/읽기와 쓰기(55분)/한국 사회와 문화 마무리(20분)으로 제시되어 있다.

노출 정도가 높은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로 인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의 현 위치와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지만 이론적인 부분만 언급, 현장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실제적인 개선점들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선행논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논문은 그리 많지 않으며 특히 100시간의 각 단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의 교육시간은 학문 목적의 학습자보다는 대다수가 결혼이민자 등 일반 이민자 참여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실제적인 언어교육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각 단계별 100시간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육과정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표준화된 한국어교육으로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교육시간을 포함한 교육과정의 개선이 시급함을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2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우리나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겠다.¹⁵⁾ 독일은 2004년에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도화했다.¹⁶⁾

15) 차용호 (2015).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 이민통합과 차용호 사무관은 국립국어원과 법무부가 공동주관한 201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에서 ‘한국의 이민정책의 이해’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는 관 주도 즉 국가가 관여하는 유럽식 사회통합정책을 모델로 정책이 만들어졌음을 밝힌바 있다. 특히 초기에 덴마크와 독일의 사회통합정책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했다.

16) 김일란 외(2008) 참조.

박혜숙(2012)은 독일어 과정은 기초과정부터 단계별 학습을 거쳐 자립적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B1 수준의 독일어 능력을 갖추는 것, 즉 이민자가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독일 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언어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일반 통합과정의 경우 기초 300시간과 상급과정 300시간 도합 600시간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수 통합과정의 경우에는 대부분 90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빠른 학습 성취도를 보이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중 이수과정은 400시간으로 구성되는 등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다.

<표 1 독일 일반 통합과정의 개요¹⁸⁾>

일반 통합과정							
	독일어 과정						오리엔테이션 과정
	기초과정			상급과정			
시수	100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100 시간	45시간
목표			A2 ¹⁷⁾			B1	오리엔테이션과 정 시험
교육 내용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능력(쇼핑, 주거, 건강과 질병, 일과 직업, 직업교육, 자녀양육과 교육, 여가 활동, 사회활동, 미디어, 이메일 쓰기, 공문서 작성하기, 전화하기, 취업 지원 등)						독일의 법질서, 역사, 문화, 권 리와 의무, 사 회생활의 유형, 종교 관용 평등 과 같은 사회적 가치
교육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학교 ▪ 다양한 민간 교육기관 						
교재	연방 이민난민청에서 해당과정을 위해 허가한 주교재 및 부교재						

17) 김종섭 외(2010)에서는 유럽공통참조기준으로 언어학습자들의 의사소통 활동과 언어능력 수준을 기술하기 위한 세분화된 척도 체계로 총 6

또한 일반 통합과정 외에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위한 학습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특수 통합과정으로는 알파벳과정, 청년과정, 부모과정, 여성과정, 장기체류자 과정, 집중이수과정 등이 있다고 했다. 이는 동일한 이주배경 또는 비슷한 연령대 및 언어 수준의 이민자들끼리 독일어를 배움으로서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고 독일 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집단에 따라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일반 통합과정과 동일하게 각 도시의 시민학교와 다양한 지역단체 및 언어교육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수 통합과정 프로그램에 대한 이민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특수 통합과정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고 했다.¹⁹⁾

<표 2 독일 특수 통합과정 프로그램의 독일어 과정²¹⁾>

프로그램	대상	교육시간 20)	특징
알파벳 과정	문식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이민자	90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교습이 가능하도록 작은 그룹으로 구성 ▪ 300시간 연장 가능
여성교육 과정	종교적 또는 문화적 이유로 일반 통합과정에 참가가 어려운 여성	90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교사에 의해 교육 ▪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또는 학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체험
부모교육 과정	자녀의 양육, 교육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부모	90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어 외 유치원 및 학교 교육과정에 관해 배우고, 각 교육기관의 교사와의 교류 주선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데 기초적 언어사용을 목표로 하는 A1-A2단계와 자립적 언어사용을 목표로 하는 B1 - B2단계, 그리고 숙달된 언어사용이 가능한 C1-C2단계로 나뉜다. A2단계는 우리나라의 2급에 해당한다.

18) 박혜숙(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개선 방안, 인문학연구 44, p272 표 참조

19) 박혜숙(2012)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의 교육체제 전반 및 기회에 관한 지식 제공
청년교육과정	취업 준비가 필요한 청년층	90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어 외 학교 및 직업교육, 직업과 취업 등에 관한 교육 제공 ▪작은 학습 집단 및 경우에 따라 2인의 교사 ▪직업교육기관 및 기업에서의 실습과정 포함. ▪상담 및 교통비 지급
장기체류자과정	독일어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장기체류자	90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언어기능 위주의 학습
인텐시브과정	학습 진보가 빠른 학습자	400시간	

이상에서 간단히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을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델이 되었던 독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처럼 일률적으로 한국어교육과정이 400시간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참여대상자에 따라 400에서 900시간까지 유동적이며, 참여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 현황

결혼이민자 및 일반 외국인들의 국적 취득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고자 자립하는데 필

20) 박혜숙(2014)에서는 각각 오리엔테이션과정을 포함하여, 교육시간이 알파벳과정(945), 여성과정(960), 부모과정(945), 청년과정(945), 장기체류자과정(945), 인텐시브과정(430) 진행됨을 밝히고 있다.

21) 박혜숙(2012) 표 참조.

수적인 기본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이다.

3.1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도입 취지

법무부가 밝히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의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다.²²⁾

첫째, 이민자가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둘째,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셋째, 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 정책 등에 반영한다.

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다문화 정책의 성격 중, 외국인이 한국어와 한국사회 문화를 빨리 익힘으로서 한국사회에의 융합을 강조하는 동화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둘째 조항의 재한외국인에 대한 지원정책을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표준화하는 방침은 현재 이민자 대상 한국어 프로그램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으로 모아지는 최근의 언어정책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2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추진 경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은 2008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법무부 훈령 제 62호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었다. 참여대상

22) 사회통합정보망 참조.

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신고증을 소지한 합법 체류외국인 및 귀화자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에 자료 수집, 연구에 착수한 이래 2009년 4월 시범적으로 전국 20개 운영기관에 1,331명으로 출발, 2017년 7월 현재 전국 309개 운영기관에 26,010명이 참여해 도입 8년 만에 운영기관은 약 15배, 참여자는 약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및 운영기관 23)>

(단위 :년/명)

구 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7
참여자 (누계)	143,418	1,331 (1,331)	4,429 (5,760)	6,519 (12,279)	12,444 (24,723)	14,014 (38,737)	22,361 (61,098)	25,795 (86,893)	30,515 (117,408)	26,010 (143,418)
운영 기관	-	20	77	150	271	278	304	308	300	309

결혼이민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2012년까지는 한국어 초급단계인 1, 2단계만 거치면 바로 5단계로 진입하도록 했으나 2013년부터는 결혼이민자들도 반드시 중급과정인 3, 4단계를 거치고 중간평가에 합격해야만 5단계에 진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며 2016년부터는 한국어능력을 보다 강화하여, 5단계 과정 중 필수로 참여해야 하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국적체류 상담 시 한국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국적취득 상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혜택을 무효화하고, 귀화면접시험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

3.3 과정 및 이수 시간

23)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참조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크게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과 한국사회이해과정으로 진행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과정은 총 415시간, 한국사회이해과정은 영주용과 국적용으로 구분하여 50, 70시간으로 각각 진행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 현행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과정별 이수 시간²⁴⁾>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과정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기초	초급1	초급2	중급1	중급2	
이수 시간	15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100시간	50시간 (영주용) 70시간 (국적용)
사전 평가	구술3점 미만 (시필점 수무관)	3점~20점	21점~40점	41점~60점	61점~80점	81점~100점

3.4 참가 신청 및 절차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신청대상은 모든 합법적 체류이민자 및 귀화자로, 희망에 따라 자율 신청한다. 신청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한 온라인으로만 신청한다. 교육등록 및 참여는 사회통합정보망 마이페이지에서 체류지 인근 운영기관 중 교육받기를 원하는 법무부 지정 운영기관에 온라인으로 참여자 등록 신청하고 신청된 교육기관의 운영일정에 따라 교육에 참여한다.

3.5 기본 소양 평가

24) 사회통합정보망 참조.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평가는 사전평가 및 각 단계별 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로 나누어진다.

이중 중간평가는 KIIP-KLT라고 하는데 한국어과정의 최종 단계를 마친 4단계 과정 종료자들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단계에 진입할 수 없다.²⁵⁾ 불합격자는 한국어과정 4단계를 재이수해야만 다음 단계인 5단계로 이동이 가능하다.

종합평가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KINAT)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한국사회이해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²⁶⁾ 불합격자는 5단계를 재이수 한 후 다시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고, 또 불합격할 경우 5단계를 다시 재재이수 해야만 최종 이수완료로 처리된다. 2016년부터는 5단계 이수 후 필수과정인 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상담 시 의사소통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혜택을 무효화하고, 국적취득 신청 시 면접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4.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앞 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았고, 본 장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겠다.

4.1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의 문제점

앞서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실제로 현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을 살펴보려고 한다.

25) KIIP-KLT는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Korean Language Test 의 약자이다.

26) KINAT는 Korea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ptitude Test이다.

첫째, 한국어교육의 근본 목적인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각 단계별 100시간은 부족하다. 또한 이러한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학습자들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기 힘들다. 한국어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한국어교육을 통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언어의 4대 기능을 고루 활용하여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그러나 현행 100시간으로 현재의 교재를 진행해 나가기에는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둘째, 평가 상의 문제이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단계평가 탈락자나 한국어 과정의 최종시험인 중간평가에서 60점미만의 점수를 획득해 탈락할 경우, 한 번 더 재이수를 하기만 하면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진입할 수 있다.

셋째, 사전평가를 제외한 다른 평가에서는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이 통합되어 60점 이상만 넘으면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평가의 점수 구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전평가에서는 필기시험과 상관없이 구술시험이 3점 미만일 경우 기초인 0단계로 배정하게 되어 있으나 각 단계평가 및 중간평가, 종합평가에서는 이에 대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힘들지만 필기점수의 충족으로 인해 다음 단계 진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넷째, 교육장소의 문제점이다. 현재 교육 장소는 각 단계마다 유동적인데,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단계가 개설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맞는 단계를 찾아 멀리 이동해야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실제로 2016년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개설된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참여자 12명의 경우, 학교가 위치한 관내 지역 거주자는 3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리는 타 지역 거주자였다.

다섯째, 최근 점차 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국적취득 후라도 부모교육이라든지 자녀 양육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특별과정으로서의 교육과정이 없다. 오직 표준화된 일반과정만 일 년 3학기제로 운영되고 있다.

4.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개선 방안

이상에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언어교육으로서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4.2.1 교육 시간 확대가 필요

현행 100시간의 단계별 교육 시간을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에서 제시한 150-200시간으로 확대하거나, 자립적 의사소통능력 함양을 목표로 100시간에 활동을 통한 내재화까지 가능한 활동 중심 교재구성으로의 교재 개정이 바람직하다. 현행 교재로는 각 단계별 100시간은 부족하다. 교재의 각 단계는 20과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대한 어휘와 활동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한 급수를 100시간으로 한 단계를 마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중급 단계에서 전문적이고도 방대한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휘 영역의 경우, 이미혜(2015)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어휘영역이 한국어능력시험의 어휘보다 다소 높은 것은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한국어를 사용하는 일상생활에의 노출 정도가 높은 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등급 체계와 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를 살펴보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한국어 과정(4단계 중급2)은 일반 한국어능력시험의 3급보다는 쉽고 4급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참여자들이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학문 목적의 학습자들이 아닌 일반 학습자들이 대다수인 현실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각 대학에서 학문 목적의 한국어과정으로 각 급별을 200시간으로 진행하거나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에서 200시간을 교육시간을 제시하고 있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들은 이보다 훨씬 짧은 100시간에 오히려 어휘 영역은 훨씬 더 어렵고 단시간에 단계를 마쳐야 하는 기현상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침서에 제시된 표준 차시로는, 참여자들이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정확하게 익히고 활동으로 내재화하여 발화하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단계별 100시간의 틀을 표준모형에 맞춰 150시간-200시간으로 늘리는 등 단계별 시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²⁷⁾

다음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 등급 체계와 표준교육과정과 한국어능력시험의 등급체계를 비교한 것이다.

<표 5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등급 체계와 타 교육과정의 등급 체계 비교²⁸⁾>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초급		중급		고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국제통용한국어 교육표준모형 (200시간)	초급		중급		고급		최상급
	1	2	3	4	5	6	7
사회통합프로 그램한국어 (100시간)	초급		중급				
	1	2	3	4			

위에서 볼 때에도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이 대체로 각 급별에서 20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은 100시간을 각 급별 교육시간으로 정하고 있어, 자립적 의사소통능력 함양이라는 한국어교육 본연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2.2 재이수제도의 검토

27) 2016년 Y 기관 중급2단계 참여자들은 수업 마지막의 만족도조사에서 대부분 150시간, 그리고 200시간의 수업시간 확대를 원한 바 있다.

28) 김중섭 외(2011), 이미혜(2015) 참조.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은 각 단계평가 및 중간평가에서 60점 이상만 취득하면 다음 단계로 진급하지만 각 평가에서 불합격할 경우 한 번 더 이수만 하면 다음 단계로 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수될 수 있는 재이수제도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재이수 후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재이수 후 평가시험을 다시 치고, 평가시험 합격 후 완료하는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4.2.3 평가체제 개선

현행 구술과 필기를 통합하여 60점 이상만 되면 승급여부를 결정 짓는데, 구술과 필기에 각각 커트라인을 도입해 적용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언어교육의 목표인 한국어로 말하기가 원활하지 않아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한데도 필기시험의 충족으로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현상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

4.2.4 연간계획 수립 및 교육장소 확대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 수립 및 교육장소가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예산에 따라 각 분기마다 어디에서 개설이 될지 아주 유동적이기 때문에, 단계가 개설될 때마다 자신의 단계에 맞춰 찾아서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크다. 따라서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면, 연간 계획을 통해 개설 단계와 장소가 미리 고지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2.5 이수완료 이후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적 취득 및 체류 자격 변경 시 혜택을 원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일반과정의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고 참여자들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거나 이수 완료 후 연계한 프로그램이 없다. 앞서 살펴봤던,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 중인 독일의 사례를 보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점차 늘고 있는 중도입국자녀라든지, 국적취득 후라도 보다 고급 수준의 한국어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자녀양육과 관련 특별교육과정 등 수요조사를 토대로 한 수요자 중심의 특별과정 운영이 필요하다.

5. 결론

지금까지 현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을 진행하면서 느끼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다.

2009년 처음 시범으로 도입된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은 반드시 사전평가를 통해 참여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지자체(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의 연계과정, 본국에서 사전교육프로그램을 마치고 입국한 결혼이민자 등은 사전평가 없이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연계되어 보다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았다. 이렇듯 정부 부처별 중복·유사 사업의 일원화 추진으로 표면적으로는 지자체중심이지만 현재 한국어교육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로 집중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역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은 초기에 도입된 정해진 틀을 그대로 가지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의 자립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에는 개선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는 바로 유학생 등 학문목적 학습자들보다는 결혼이민자 등 일반 학습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표준 한국어교육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시간보다 짧은 100시간의 교육시간에, 한국어 숙달도를 한국어능력시험 3급보다는 약간 높은 4급 초반에 맞추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어휘영역의 경우는 한국어능력시험의 4급보다 어려운 상위 어휘를 다루고 있는 모순된 상황들로 인해 참여자들이 교육 시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해진 4단계(각 100시간) 시간만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100시간의 과정만으로 이민자들의 자립 가능한 언어능력을 키우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참여자의 수준을 고려한 효율적인 교육과정의 시간 조정이 필요하며, 활동이 가능한 시수 확대 등을 통해 언어교육의 궁극 목표인 의사소통능력을 향상 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이, 한국 정부의 언어교육의 중심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향후 사회통합프로그램 개정 시 이민자의 배경과 성격에 맞는 다양하고도 세분화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이수완료 이후에도 보다 실제적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평생교육으로서 지속적인 한국어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자의 욕구를 반영한 특별과정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이 언어교육의 궁극 목표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 자립적 언어능력 향상 등 언어교육 본연의 역할을 잘 담당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3).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사용 지침서, 한국이민재단.
- 국립국어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5).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2, 한국이민재단.
- 김일란·김남형(2008). 사회통합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여성 결혼이민자 대상의 한국어교육 방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8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603쪽~623쪽.
- 김중섭 외(2010).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 김중섭 외(2011). 국제 통용 한국어교육 표준 모형 개발2, 국립국어원.
- 박혜숙(2012).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과정 개선 방안-독일의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44권,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63쪽~310쪽.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5).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안내 책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2017). 통계월보 11월호.
- 이미혜(2015).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육과정의 현 위치와 발전 방향,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5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 이성순(2008). 이민자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도입에 관한 고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다문화사회통합프로그램 구축방안을 위한 공청회’ 발제문.
- 이성순(2010),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현황과 과제-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1권 4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65쪽~187쪽.
- 차용호(2015).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교원 대상 연수회 ‘이민정책의 이해’ 강의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
인터넷 사이트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

필자 소개

성 명 : 이경주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전자우편 : lkjyh@hanmail.net

투고일: 2018. 1. 15 / 심사일: 2018. 2. 2 / 심사완료일: 2018. 2. 9
--